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대학설립·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구구조변화,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(원)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

이에, 대학(원)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

또한, 정부는 지역대학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,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-기업간 상시 협업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

이러한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여 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(校舍)·교지(校地)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·학·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학(원) 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(안 제2조의3 제4항)

- 나.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, 석사 정원의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(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)
- 다.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정원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(안 제2조의3제8항)
- 라.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(안 제5조제5항)
- 마. 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교지(校地)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(안 제2조제6항제2호)
- 바.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교지(校地), 교사(校舍)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(안 제2조의9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9.30.~2021.11.9.)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제2항제3호
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

제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”를 “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(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)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(다만,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대학원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경우,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
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.

제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9(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) ①

대학(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교사: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

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

2. 교지: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

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대학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”을 “대학: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위치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별표 1의5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6 제1호가목 중 “95퍼센트”를 “9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 증원 기준란을 제1호증원 기준란으로 하며, 같은 란(중전의 제1호부터 다목까지) 가목 중 “1.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”을 “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“감축하여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”을 “감축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립인가기준등) ① ~ ④ (생 략) ⑤ 삭 제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 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 유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 략) 2.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 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 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~ 5. (생 략) ⑦ ~ ⑨ (생 략) 제2조의3(학과 · 정원 등의 증설 · 증원 기준) ① (생 략) <u>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</u>	제2조(설립인가기준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</u> <u>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</u> <u>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</u> <u>도시 내의 산 · 학 · 연 클</u> <u>러스터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⑦ ~ ⑨ (현행과 같음) 제2조의3(학과 · 정원 등의 증설 · 증원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
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
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
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
만,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
한 전체에 대한 교원 확보율은
전년도의 교원 확보율 이상으로
유지하여야 한다.

1.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
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
로 선정될 것

2.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
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
표 1의5를 충족할 것

③ (생략)

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·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(이하 “자체조정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확보율

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
균(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직

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 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)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(다만,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 <단서 삭제>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대학원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는 경우,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
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

<신 설>

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.

제2조의9(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) ① 대학(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

제4조(교사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
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 략)

3. 부속시설: 「고등교육법 시행

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
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
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
산·학·연 클러스터에서 운영
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
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
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
만,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
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
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
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1. 교사: 별표 3에 따른 계열별
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
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
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
적 이상

2. 교지: 제1호에 따른 교사의
건축면적 이상

제4조(교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령」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갓출 것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과 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가. 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과 계열이 있는 대학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

나.·다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5조(교지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--. -----

-----.

가. -----

----- 대학: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교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위치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의5]

입학정원 증원범위	학과 또는 전공의 증설에 따른 교원 수 (해외학자 수)
30명 이내	7 ~ 10명(교원수의 40퍼센트 이상)
50명 이내	11 ~ 20명(교원수의 35퍼센트 이상)
90명 이내	21명 이상(교원수의 30퍼센트 이상)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의6]

대 상	증원 기준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증원률이 <u>95퍼센트</u> 이상인 대학 나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<u>1.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</u> 나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<u>2명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</u> 다. 의·치과대학의 입학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의6]

대 상	증원 기준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증원률이 <u>90퍼센트</u> 이상인 대학 나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<u>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.</u> <u><삭제></u> 나. 의·치과대학의 입학

	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. 이 경우 감축되는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2. (생략)	(생략)
3.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.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	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. 이 경우 감축되는 의·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
2. (현행과 동일)	(현행과 동일)
3.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.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.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21